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3호)
-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병원, 치과병원, 종합병원과 같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제1항)
-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되, 이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(안 제87조의2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안 제87조의2제3항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¹⁾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²⁾를 한 경우에 형을 필요적으로

1) 「의료법」 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
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다만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4조제1항³⁾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「의료법」상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범죄행위가 발견된 공익신고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.

-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, ①신고자가 금품이나 특혜 요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고의 동기·경위 등에 비추어 책임을 감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 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, ②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침해행위 중 무자격·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·무면허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, ③ 기소된 피고인이 형 면제 요건을

2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(정의)

2. “공익신고”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

나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

3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4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증명하기 위해 조사나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관마다 다른 인정 기준, 공범 소송의 진행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